(뒤 쪽) 작 성 방 법 1. ① 퇴직급여추계액란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 “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)”의 󰊊󰊔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※ 2011.1.1.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･신탁의 금액과 2011.1.1.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･신탁으로 인해 2011.1.1.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･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. 2.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“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”을 적습니다. 3.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란에는 ②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(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)을 적습니다. 4. ⑧ 손금산입한도액란에는 ⑥란의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에서 ⑦란의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을 적되,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｣ 제29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그 금액이 음수(－)이면 “0”을 적습니다. 5. ⑪ 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. 6. ⑫ 조정금액란이 양수(＋)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, 음수(-)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. 7. ⑭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 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. 8. ⑯ 기중퇴직부담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 보험･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 9. ⑳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･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